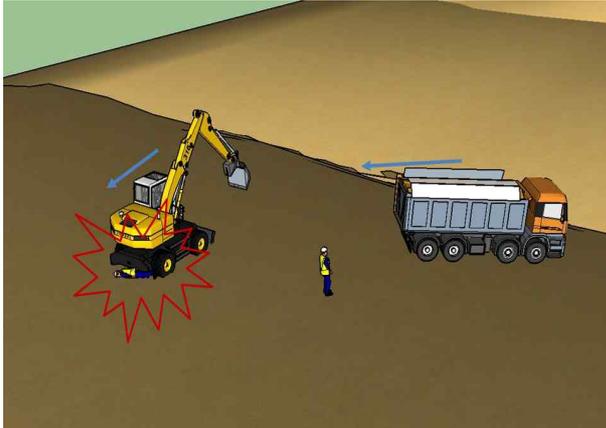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19.7.6.(토) 인천시 남동구 소재 OO건설 「OOIC간 진입도로 개설공사」 현장에서 OO건설 소속 작업자가 수로박스 상부도로의 장마철 수방용 마대 쌓기 작업을 위해 대기 중 전진하던 굴삭기 앞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방지 미 실시
 - 굴삭기(차량계 건설기계)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굴삭기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거나,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하나 미 실시



재해 예방 대책

-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방지 철저
 - 굴삭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시키지 않거나,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함
- 굴삭기(차량계 건설기계) 사용 시 작업계획 수립·준수
 -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, 작업장의 지형·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
 - 가.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
 - ※ 굴삭기 후진 시 경보음 및 후방카메라 작동여부 확인
 - 나.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
 - 다.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